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청심사 청구 대상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원 포함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75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청심사 청구 대상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원 포함	2
2. 개정안 부칙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10.
3. 회 부 일 : 2025.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각급학교의 교원과 다르게 불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소청심사 청구 대상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원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청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u>각급학교 교원의</u>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략)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u>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u>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학력·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함)’이 있으며, 같은 법은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교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함.

-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에게 등록된 시설 중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교육감이 지정한 것으로(제31조제1항 및 제2항),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고,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¹⁾ 같은 조 제8항은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²⁾
- 전공대학은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환·운영하는 것으로(제31조제4항), 전공대학의 교원 관련 사항은 현행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공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두고 운영하

1)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둘 수 있고,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을 개정 한 법률이 2026.5.1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³⁾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구분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전문대학 학력·학위 인정
설치 등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등록된 시설 중,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교육감이 지정	(제31조제4항) •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환·운영
교원	(제31조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음 •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31조제3항) * 개정법률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둘 수 있음 •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31조제8항) •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	-

이와 같이 「평생교육법」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학력 인정 학교급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별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교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사항은 자체 근로계약(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법인 정관(전공대학)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이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

3)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교원 중,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문대학 학력·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의 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임에도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도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법률 제21080호, 2025.11.11.개정, 2026.5.12. 시행).

행됨.⁴⁾

- 한편,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과 국·공·사립학교 교원은 신분보장,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다르게 적용받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각급학교의 교원과 다르게 불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청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 청구 대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 및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⁵⁾

소청심사기관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나,⁶⁾ 특정직공무원 중 군인, 교육공무원 등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 대상으로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 외에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교원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⁷⁾

5) 인사혁신처, 「2024 공무원 인사실무」, 2024.1., p.485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6)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7) 「교원지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국·공·사립 학교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교원에 대한 사항은 소청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교원, 교직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 진행으로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절차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청구 대상 중 ‘교원’에 대한 사항의 범위에는 ‘각급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사항만 포함되고, 국·공·사립 학교 교원 중에서도 임용절차 등이 상이한 ‘기간제교원, 겸임교원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청심사 청구 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교원과의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권자]

근거조항		내용
유아교육법	제2조	•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유치원)의
	제20조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제19조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고등교육법	제2조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제14조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교육공무원법	제61조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 아울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 사항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은, 해당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각급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법률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해 신분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교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근거와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원 신분보장 등 근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각급학교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전문대학 학력·학위 인정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 자체 근로계약, 시설 규칙 등으로 자율적 규정	• 법인 정관으로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 제43조(교원의 존중과 신분보장) - 제43조의2(당연퇴직) - 제44조(휴직) - 제44조의2(직위해제) - 제45조(휴직기간 등) - 제46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제한) - 제47조(정년) - 제48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 제49조(고충처리) • 「교원지위법」 - 제4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 제58조(면직의 사유) -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 제59조(휴직의 사유) - 제60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 「교원지위법」 - 제4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개정안에 따른 경우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교원의 권리구제 과정에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교원지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급학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며, 현행 소청심사 청구대상은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교원지위법의 입법 취지는 ‘교원 신분’의 특수성 보호를 위해 별도의 준사법적 절차(소청심사)를 마련한 것이므로, 동 개정안은 교원지위법상 ‘교원’의 범위 설정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신중검토

- 현재 해당시설 교원의 징계·해고 등의 구제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으로 해소하고 있으나, 소청권 부여시 분쟁해결창구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이 우려됨.
- 현재 학교 내 교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제교원, 겸임교원 등에 대해서도 임용 및 계약의 성격상 소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 발생이 예상됨.
- 교원지위법의 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 유사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만 규정함.

☐ 그러나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9